

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2003-66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3. 11. .
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일·숙직수당을 당직시설상태, 당직근무인력, 근무형태등을 고려, 실비를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
-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일·숙직수당 지급 신설 (안 제7조 제4항)

3. 참고사항

- 전북 예산 13300-614(2003. 7. 29)호
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

김제시조례 제 호

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고, 동조 “제4항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당직명령을 받아 일·숙직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